의안번호	제94호
의결연월일	2022. 10. 31. (제119회)

의결사항

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2. 10. 26.

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94

제안연월일 : 2022. 10. 26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 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'22.1.13.시행)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방법을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가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개정 (안 제2조제2항)

나. 부위원장 규정 신설 (안 제2조제3항)

3. 참고 사항

가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규칙

창원시의회 규칙 제 호

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(이하 “위원회 조례”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 **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은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(이하 “위원회 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(이하 “위원회 조례”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③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참 고 **관계 법령**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

[시행 2022. 10. 7.] [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84호, 2022. 10. 7., 일부개정]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이 경우 선출된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참 고 **현행 규칙**

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1. 13.] [경상남도창원시의회규칙 제35호, 2022. 1. 13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의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은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(이하 “위원회 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의원이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, 욕설, 비방행위,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창원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.

② 위원회는 의장이 「창원시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) 제79조 및 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.

제5조(소위원회)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,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·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

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, 부의장, 위원장 및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)

제7조(심문)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.

제8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9조(증명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0조(통고)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.

제11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3조(위임)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, 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, 진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부칙 <의회규칙 제36호, 2022. 1. 13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